

제 956 호
1983. 3.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김성태
편집 : 공보편집팀
전화 :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출판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례

◎ 조 례

제 1736 호 : 서울특별시유계 산매각락매 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한
조례 3

제 1737 호 : 서울특별시립 도서관설치조례 중개정조례 3

◎ 교육규칙

제 267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4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83

◎ 훈 령	
제 589 호 : 서울특별시 소방 구급대 운영규정 중개정규정	8
◎ 고 시	
제 147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9
제 148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 (기간변경)	9
제 149 호 : 묵정구역제 2 지구층무아파트지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10
제 15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1
제 15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1
제 15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13
제 15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4
제 154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변경결정	15
◎ 공 고	
제 155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	15
제 156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16
제 157 호 :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토지환지처분공고	17
제 158 호 : 관인재교부및 폐기공고	18
제 159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18
제 161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행정처분공고	20
제 162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공고	20
◎ 강남구청공고	
제 117 호 : 관인재교부공고	21
◎ 예 규	
제 434 호 : 민원서류처리상황보고지침	2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매각특례대상 재산의 범위에 관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3.14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36 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매각특례
대상재산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법시
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부칙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매각 특
례대상인 소규모 잡종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잡종재산의 범위)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대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
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
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
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물

그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
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사유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27일부터 적
용한다.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
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3.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구 본 식

○서울특별시조례제 1737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명 칭	위 치
종로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사직동 산 1 번지 9 호
남산 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후암동 30 번지 84 호
동대문 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신설동 109 번지 4 호
영등포 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121-25
정독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화동 1 번지
어린이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사직동 1 번지 27 호
마포 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아현동 602 번지 1 호
용산 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후암동 30 번지 90 호
강남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동 163 번지 29 호
도봉 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미아동 127 번지 5 호
강서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등촌동 산 25 번지 19 호

규 칙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3. 12</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구 본 석</p> <p>◎ 교육규칙제 26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p>	<p>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별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공무원정원총괄표			
총 계	4,563		
별정직제	7	지방간호기사	3
비상계획관 (5급상당)	1	지방약무기사	1
비서관 (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보건기사	8
비서 (6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294
속기사 (6급상당)	2	지방사서보	70
전산처리사 (7급상당)	2	지방건축기사보	12
전산처리사 (8급상당)	-	지방기계기사보	6
3급내지 9급 제	1,438	지방전기기사보	11
지방부이사관	1	지방토목기사보	6
지방외무부기감	1	지방보건기사보	69
지방서기관	5	지방간호기사보	7
지방외무기정	5	지방행정서기	166
지방행정사무관	76	지방사서서기	64
지방사서관	14	지방건축기원	6
지방보건기과	2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과	1	지방전기기원	1
지방토목기과	1	지방기계기원	-
지방건축기과	4	지방보건기원	3
지방행정주사	484	지방간호기원보	3
지방사서	42	지방보건기원보	10
지방건축기사	19	지방행정서기보	27
지방전기기사	5	지방사서서기보	-
지방기계기사	5	지방간호기원보	-
지방토목기사	5	지방전기기원보	-
		기 능 직	17
		지방통신장 (6등급)	1

지방전기장 (6 등급)	2	지방기계원 (8 등급)	-
지방기계장 (6 등급)	10	지방전기원 (8 등급)	-
지방기계장 (7 등급)	19	지방기계원 (9 등급)	-
지방전기장 (7 등급)	3	지방조무원 (9 등급)	-
지방통신장 (7 등급)	2	교 용 원	3,081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교육위원회 (본청) 지방공무원정원			
총 계	250	지방보건기사	1
별정직제	5	지방행정주사보	23
비상제획관 (5 급상당)	1	지방사서보	1
비서관 (5 급상당또는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건축기사보	5
비서 (6 급상당또는지방행정주사)	1	지방전기기사보	2
속기사 (6 급상당)	2	지방기계기사보	2
5 급내지 9 급제	149	지방토목기사보	2
지방행정사무관	22	지방보건기사보	2
지방보건기과	1	지방행정서기	23
지방전기기과	1	지방토목기원	1
지방건축기과	3	지방건축기원	4
지방토목기과	1	지방전기기원	1
지방행정주사	41	지방보건기원	
지방토목기사	2	기 능 직	
지방건축기사	8	지방기계장 (7 등급)	
지방전기기사	1	지방전기장 (7 등급)	
지방기계기사	2	교 용 직	96
○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878		
3 급내지 9 급제	336	지방사서	42
지방부이사관	1	지방보건기사	7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간호기사	3
지방서기관	5	지방전기기사	
지방의무기정	5	지방기계기사	
지방행정사무관	17	지방약무기사	1
지방사서관	14	지방행정주사보	20
지방보건기과	1	지방환서보	69
지방행정주사	19	지방보건기사보	9

지방간호기사보	7	총 계	506
지방기계기사보		별정직제	2
지방전기기사보	1	전산처리사 (7 급상당)	2
지방행정서기	17	전산처리사 (8 급상당)	
지방사서서기	64	5 급내지 9 급제	110
지방보건지원	3	지방행정사무관	30
지방간호지원	-	지방행정주사	30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주사보	37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보건기사보	3
지방보건지원보	3	지방전기기사보	5
지방간호지원보		지방행정서기	5
기 능 직	16	지방보건지원	
지방기계장 (6 등급)	3	지방전기지원	
지방전기장 (6 등급)	2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통신장 (6 등급)	1	기 능 직	17
지방기계장 (7 등급)	7	지방기계장 (6 등급)	5
지방전기장 (7 등급)	1	지방전기장 (6 등급)	1
지방통신장 (7 등급)	2	지방기계장 (7 등급)	9
지방기계원 (8 등급)		지방전기장 (7 등급)	2
지방통신원 (8 등급)		지방기계원 (8 등급)	
지방기계원 (9 등급)		지방전기원 (8 등급)	
교 용 직	526	지방조무원 (9 등급)	
○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교 용 직	377
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구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교육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지방건축기사	11
총 계	426	지방전기기사	4
5 급내지 9 급제	242	지방기계기사	3
지방행정사무관	7	지방토목기사	3
지방건축기사	1	지방행정주사보	59
지방행정주사	65	지방기계기사보	4

지방건축기사보	7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전기기사보	3	기능직	1
지방보건기사보	7	지방기계장(6등급)	1
지방토목기사보	4	교용직	346
지방행정서기	52	○ 국민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지방건축기원	2	총 계	1,905
지방기계기원		6급내지 9급계	367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행정주사	213
지방전기기원보		지방행정주사보	57
기능직	3	지방행정서기	49
지방기계장(7등급)	3	지방보건기사보	48
교용직	181	교용직	1,538
○ 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 서울직업학교및부설성인기술원정원	
총 계	578	총 계	20
6급내지 9급계	231	6급내지 9급계	3
지방행정주사	114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97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	20	교용직	17

훈 령

서울특별시 소방구급대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3.14.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89 호

서울특별시소방구급대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소방구급대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22:00부터 익일 08:00"를 "20:00부터 익일 09:0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서울특별시 고시제 381 (82.9.16) 동고시 제 272 (82.7.19) 및 동고시 제 176 (82.4.29) 호로 재결정하고 건설부 고시

제 336 (82.9.21) 호로 변경 결정된 삼일공원등 3개소 공원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시행령 제 9조제 3항 및 제 6조 제 1항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3.1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조서

공원종류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근린공원	삼일공원	동작구 사당동	105,500	
"	와우공원	마포구 창전동	60,700	
"	청량공원	성북구 하월곡동 동대문구 회기동	1,016,253	

나. 지적승인 도면: 별첨과 같음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기간변경)

1.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 로 아파트지구 지적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97 호 (79.2.28) 로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 355 번지 일원 (2-1주구) 에 대하여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3.12.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 시행자 사업위치 면적 사업시행 기간	현대건설(주) 대표 이명박 강남구 압구정동 355 번지 일원 (2 - 1주구) 100,463.73 평 79.3 - 82.12.31.	좌동 ' ' ' 79.3 - 83.3.30.	
<p>나. 변경사유</p> <p>(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82.12.7자 변경승인(건설부)되었고 83.1.25 서울시 고시 제 44호로 변경승인 고시되었으며,</p> <p>(2) 주기 452-0268 호로 82.5.3 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현대 12차 아파트 사업기간이 83.7.31까지이며, 주기 452-0616호로 82.7.23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현대 13차(사원용) 아파트 사업기간이 83.8.30까지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음.</p> <p>다. 관제도서 열람기간 1983.3.12-1983.3.19 (7일간)</p> <p>라.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주백기회과) 강남구청(시민봉사실)</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9 호</p> <p>- 목정구역제 2 지구충무아파트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p> <p>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호 (82.5.</p>		<p>10)로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된 목정구역 제 2 지구 충무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3.1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1. 재개발 사업의 명칭 목정구역 제 2 지구 충무아파트 재개발사업</p> <p>2. 시행구역 면적 : 2,568</p> <p>3. 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 충무아파트 재개발조합 조합장 송정환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목정동 11</p> <p>4.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의 내역 가. 토지 : 2,528 건축부지(대지) : 2,366 두지 : 162</p>	

<p>나. 건축물 층수 : 지하 1층 지상 10층 면적 : 지하 1층 824.7 지상 1 - 10층 : 각층 433.85</p> <p>5. 분양대상 종전토지 및 건축물 :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150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34번지 3호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p>	<p>조외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3.3.14.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제일개발주택공사 김재익외 1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동 134번지 3호 나. 면적 : 5,829 ㎡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4동 84세대 기타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83.3-1984.3.30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유별</th> <th>번호</th> <th>쪽(㎡)</th> <th>연장(㎡)</th> <th>기점</th> <th>종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점</td> <td>소로</td> <td></td> <td></td> <td>6</td> <td>62</td> <td>둔촌 134</td> <td>둔촌 134</td> <td></td> </tr> <tr> <td>배지</td> <td>소로</td> <td></td> <td></td> <td></td> <td></td> <td>-3</td> <td>-3</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등급	유별	번호	쪽(㎡)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6	62	둔촌 134	둔촌 134		배지	소로					-3	-3		
구분	등급	유별	번호	쪽(㎡)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6	62	둔촌 134	둔촌 134																					
배지	소로					-3	-3																					
<p>◎서울특별시고시제 151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8 호(82.6.2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367호(82.9.8)호로 지적고시된 강동구 명일동 산 15-1번지 일대 10,910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p>	<p>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세도서는 서울시 강남교육구청 및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2.3.16. 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명일동 산 15-1외 10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서울고명국민학교</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p> <p>라. 사업규모 및 면적 : 지적 10,910㎡ 연면적 3,199.5㎡</p>	<p>마.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 1983.3.21, 1985.3.21</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p>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p> <p>아. 시험인가설계도시 : 생략</p>
---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위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주소·성명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서울고명 국민학교	강동구 명일동	산14-2	임	399㎡	서울용산구헌강로 3가 65번지의 228(주)삼익주택	
		산15-1	임	13,091㎡중3,963㎡	"	
		산23-1	임	6,248㎡중2,385㎡	"	
		산24-1	임	9,732㎡중 289㎡	"	
		296-1	대	413㎡	"	
		296-2	답	83㎡	"	
		296-3	전	269㎡	"	
		296-4	대	2,106㎡중2,014㎡	"	
		296-5	대	10㎡	"	
		296-8	대	461㎡	"	
		294-1	도로	1,904㎡중 620㎡	서울시	
계		토지	11필지	10,911㎡		

○ 서울특별시고시제 15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82.2.3) 및
 동고시제 196 호 (82.5.14)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도로) 에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장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설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3.16.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학교	성수1가 685-80 일대	21,029	조정면적 증 : 804 ㎡
"	"	성수2가 57-15 일대	6,568	조정면적 증 : 29 ㎡
"	"	모전동 3 - 1 일대	9,607	조정면적 증 : 122 ㎡
"	"	자양동 524 일대	43,645	조정면적 증 : 220 ㎡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특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류	6	141	모전동 3-9	모전동 3-10	
"	"	"	6	250	자양동 519-1	자양동 285	
"	"	2류	8	180	자양동 240-6	자양동 578-12	
기정	소로	2류	8	280	자양동 519-1	자양동 578-12	
변경	"	"	8	280	"	"	폐지
기정	"	3류	6	278	자양동 516	자양동 286	
변경	"	"	6	278	"	"	폐지
기정	"	2류	8	144	자양동 524-1	자양동 519-1	폐지
변경	"	"	8	144	"	"	폐지

구분	등급	종별	특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2류	8	146	자양동	240-6	자양동	286	
변경	소로	2류	8	146					폐지

다. 결정도면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5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69.1.18)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제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112.113.114 호 (83.2.22) 로 공람
공고하고

2.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제 26 조와 건설부고시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3.16.

서울특별시장

공람공고 번호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명칭	사업의규모
서울시공고 제 112 호	서대문구남가좌동 259-83~277-10	도로 및 하수도	남가좌동 259 - 현내별원간 도로 확장공사	도로확장 P=6m L=180m 하수도 D=600mm L=170m
서울시공고 제 113 호	서대문구남가좌동 259-13~260-323	도로 및 하수도	남가좌동 259 - 260 간도로개설 공사	도로개설 B=6m L=214m 하수도 D=600mm L=220m
서울시공고 제 114 호	서대문구천연동 72-86~120-2간	도로 및 하수도	천연동 72번지 진입로 확장공사	도로확장 B=6m 하수도 L=160m D=600mm L=165m

1.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83.3.18-83.12.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조서참조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판제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조서참조

○서울특별시고시제 154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3. 9.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학 교 (영등포국교)	영등포구문래동 1가 35-2 일대	-	-	15,677.3	기 존 학 교
"	" (대왕중고교)	동대문구신설동 53-3 일대	-	-	32,866	"
변 경	" (심정여중고교)	은평구갈현동 227-5 일대	40,013	△9,550	30,363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55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3. 3. 14.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상 호	소 제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조 치 사 항
강남 85 호	봉화개발	신사 79-3	김종덕	무단장소이전	지정취소
강남 71 호	신광설비공사	역삼 301-5	신상호	"	"
" 28 호	동양설비	논현 126-3	안성찬	기능사미근무	영업정지 2개월 (83.3.16-5.15)
" 143 호	한일설비	방배 781-1	이주한	지정기준미달	"
" 94 호	한우기업사	논현 78-25	이창우	"	"

○ 서울특별시공고제 156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시행령 제 24 조의 3 및 동시행규칙 제 17 조 2 에 의거 도

가. 도로공사계획내역

로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토목과에 비치하고 각종 유관사업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3. 11

서울특별시장

공 사 명	공 사 구 간	시행자	시 행 기 간
광장동 339-7-320-6의 2 개소 포장공사	시점 : 광장동 339-7 종점 : " 320-6	성동구청 "	83.3.1-6.30.
성수 2-1 동 260-1-236 간 포장공사	시점 : 성수 2-1 동 260-1 종점 : " 236	"	3.15-5.25.
성수 1 가 103-670 간 도로확장공사	시점 : 성수 1 가 103 종점 : " 670	"	5.1-8.30.
자양 1 동사무소 - 자양 1 동 220-42 간하수도포장공사	시점 : 자양 1 동 220-211 종점 : " 220-42	"	2.18-6.17.
하왕 2 동 999-156-1026- 130 간포장공사	시점 : 하왕 2 동 999-156 종점 : " 1026-130	"	3.1-4.30.
마장동 481-522 간	시점 : 마장동 481	"	3.15-6.15.

공 사 명	공 사 구 간	시행자	시행기간
포장공사	종점 : 마장동 522		
용담동 137-160 간 포장공사	시점 : 용담동 137 종점 : " 160	성동구청	2.17-6.16
사근동진입로확장공사	시점 : 행당동 12-5 종점 : 사근동 197	"	5.1-12.31.
구의동 221-6-242-90 하수도공사	시점 : 구의동 221-6 종점 : " 242-90	"	3.15-7.15.
자양 2 동 489-1-433-6 간 하수도공사	시점 : 자양 2 동 489-1 종점 : " 433-6	"	3.20.-6.20.
성수 2-1 동 519-1-560-1 간하수도포장공사	시점 : 성수 2-1 동 519-1 종점 : " 560-1	"	2.21-5.21.
화양동 119-5-111-124 간 하수도공사	시점 : 화양동 119-5 종점 : " 111-124	"	2.21-6.20.
성수 1 가 685-260 간 하수 도포장공사	시점 : 성수 1 가 685 종점 : " 250	"	3.10-5.20.

나. 관계도면생략

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57 호

환 지 처 분 공 고

1. 당시가 '68.1.18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과 같이 환지처분 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기획관리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지 하며 서울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1983. 3. 15.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사업명 :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환지처분 대상위치 : 강서구 신일동 일부
 다. 환지처분면적 : 45,863.3 ㎡
 라. 관계도서의 열람

1) 환지처분내용 : 지번, 지목, 지적증감액 대한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2) 청산금 :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마. 공부정리 :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에 의하여 변경 되었으므로 동변경된 사항을 당시에 공부를 정리할 것이나 징수청산금납부 대상토지는 청산금 납부즉시 정리되며 체비지소유자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이전등기 절차를 위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소정양식) 체비지계약서 및 명의 변경승인서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바. 청산금의 징수교부 : 전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을 공부의 열람후에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징수청산금은 납입고지이전이라도 납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공고제 158 호

관인재 교부 및 폐기 공고

청량리경찰서장의 직인을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함을 동규정 제 9 조 및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3. 3. 15.
 서울특별시장

1. 사용일자 : 1983.4.1
 가. 재교부직인 : 청량리경찰서장 인
 나. 폐기직인 : 청량리경찰서장 인

인	개	제
영	각	기
공인명	청량리경찰서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
 도로공사 계획 공고

1. 도로법시행령 제 24 조의 3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2 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 한다.

1983. 3. 16.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공사계획조서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서울특별시	성내동 120번지~ 292칸	성내동 292-269 간 도로포장공사	강동구청	83.3.20-12.20
'	송파동 99-4 앞	일신여고전입로 포장공사	'	83.3.29-6.30
'	천호동 76-3-86- 2간	천호동 76-2 간 86-2 간포상공사	'	83.3.20-6.30
'	성내동 199-11~ 448-13	성내동 509-451 간 보도블럭포설공사	'	'
'	길동 416-7~ 458-5 간	길동시장전입로 포장공사	'	83.3.20-7.30
'	천호동 431-4~ 천호동 461-94 번 지간 마천동 333-7~ 327-13 번지간	마천동지내 도로 보수의 1개소 포 장하수도공사	'	83.3.20-6.20
'	봉납동 175-222- 70 간	봉납동 175-222-70 간 하수도계량공사	'	83.3.2 -4.20
'	천호동 457-13~ 457-98	천호동 457 주변하 수도계량공사	'	83.2.28-4.28
'	마천 2동 140-2~ 129-13	마천동 118-139 간 하수도계량공사	'	83.2.28-6.28
<p>○ 도면생략 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시설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본공사기간중에서 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 서울특별시공고제 161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
행정처분공고

다음의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 3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 이에 공고한다.

1983.3.17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지정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조치구분
49	한신공무(주)	유봉작	길동 393-7	무단장소이전	지정취소
52	효성실업	진용준	둔촌동 489-12	"	"
70	새광설비	윤재홍	천호동 287-22	점포면적부적합	영업정지 2개월 (83.3.17-5.16)

◎ 서울특별시공고제 162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에 대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8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3.3.17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지정업소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	처분사유	비고
용산-55	영풍공무사	청파 3가 55-3	김동균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조 제 2항 위반	
용산-37	신성설비	청파 1가 188	박귀남	영업정지 2월 (83.3.20-83.5.19)	동법 제 27조 제 2항 위반	
용산-46	명우설비공사	갈월동 71-7	장명우	"	"	

○강남구공고제 117 호

관인재교부공고





강남구서초 제 1 동장 및 서초 제 2 동장관인 및 계인을 관한 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관인규치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3.3.15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㉔

— 다 —

- 1. 관인명 : 서초제 1 동장의직인및계인
서초제 2 동장의직인및계인
- 2. 사용일자 : 1983.4.1. 09:00
- 3. 공인의 인영

인 영	 
공인명	서초제 1 동장직인및계인
인 영	 
공인명	서초제 2 동장직인및계인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34 호

민원서류처리상황보고지침(안)

1983.3.15

서울특별시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의 지역 또는 부서별 변동과 민원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민원행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한다.

제 2 조 (보고) 민원서류처리상황보고는 기보로 하되 예문(안)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한다.

제 3 조 (제출방법) 민원서류처리상황보고는 아래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 행문을 생략한다.

- 1. 본청·각실과 및 직할기관과 각 사업소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되 각실과에서는 민원서류처리부를 지참하여야 한다.
- 2. 사업소를 주관하는 각실과에서는 각사업소분을 수합하여 보고한다.
- 3. 각구청에서는 동사무소분을 수합하여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분기인원서류처리상황보고 (구 · 동)

시 민 150 ~
 수 신 : 서울특별시
 합 조 : 시민과장

발 신 : ㉔

구 분	처 리 부 서	처 리 건 수					처 리 통 수		수 수 료 수 입		
		접 수		처 리		이 결	당 거 분	누 계	당 거 분	누 계	기 타
		나 기 분	누 계	당 거 분	누 계						
총 계											
인	허 가 구										
	허 가 동										
중 명 발 중	호 객 등 초 본										
	병 사 제 증 명										
	주 민 등 록 등 초 본										
	인 감 제 증 명										
	토 지 중 명										
	신 원 증 명										
	가 옥 대 장										
	도시 제 퇴 증 명										
	남 사 제 증 명										
	기 타										
자 중 신 고	호 처 제 신 고										
	병 사 제 신 고										
	전 출 입 신 고										
	기 타										
소 원	이 의 신 청										
	소 원										
	진 점 및 교 반										
	질 의										
	진 의										
배 화	장										
시 험 및 검 사 의 퇴											
기 타 민 원											

사 령

◎ 1983년 3월 10일자

병제 9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발령일자	비고
장정우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대통령 시장	
최항도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우진영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권택상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정효성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안현호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조석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김수성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김영득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목영만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김기춘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정순구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통령 시장	

<p>◎ 1983 년 3 월 21 일자 명제 95 호</p> <p>경남간주시옥방남동 지방행정서기 이 정 회</p> <p>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p>	<p>지하철건설본부 이 규 당 지방건축기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명제 98 호</p>
<p>◎ 1983 년 3 월 16 일자 명제 96 호</p> <p>서대문구 지방자치기원보 이 대 우</p> <p>부직을 명함 3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건축지도과 최 상 근 지방건축기사</p> <p>강 남 구</p> <p>종합기술시험연구소 송 주 봉 지방건축기사</p> <p>도 봉 구</p>
<p>◎ 1983 년 3 월 17 일자 명제 97 호</p> <p>농 속 과 전 영 환 지방수의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3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명제 99 호</p> <p>내 무 국 이 원 기 지방행정사무관(보)</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도 봉 구 권 경 만 지방수의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3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 1983 년 3 월 18 일자 명제 100 호</p> <p>중구보건소 서 경 숙 지방의무기좌</p> <p>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p>

<p>동대문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p>	<p>조 화 숙</p>	<p>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p>	<p>김 경 구</p>
<p>마포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p>	<p>김 인 숙</p>	<p>중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p>	<p>김 순 화</p>
<p>마포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7호봉 지방의무기과시보</p>	<p>김 영 숙</p>	<p>© 1983년 3월 21일자</p>	<p>령제 101호</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문 호 판</p>	<p>© 1983년 3월 18일자</p>	<p>령제 102호</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문 호 판</p>	<p>© 1983년 3월 18일자</p>	<p>령제 103호</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문 호 판</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권 오 석</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문 호 판</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문 호 판</p>	<p>강 서 구 5 호 봉 지방수의사시보</p>	<p>서 울 특 별 시 장</p>